

# 입법평가의 고도화:

## 외교안보 및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의 필요성 검토

심성은



# 입법평가의 고도화:

## 외교안보 및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의 필요성 검토

심성은



# CONTENTS

---

ISSUE  
PAPER

요약문	4
-----	---

Chapter. <b>01</b>	7
-----------------------	---

---

## 들어가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Chapter. <b>02</b>	13
-----------------------	----

---

## 영향분석 현황과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

1. 영향분석 현황	14
2.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	16

Chapter. <b>03</b>	24
-----------------------	----

---

## 해외 사례

1. EU	25
2. 영국	32
3. 에스토니아	34
4. 스위스	35

Chapter. <b>04</b>	38
-----------------------	----

---

## 나가며

1. 시사점	39
2. 개선방안	40

참고문헌	42
------	----

# 입법평가의 고도화:

## 외교안보 및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의 필요성 검토

심성은<sup>1)</sup>

### 요약문

- ☑ **입법평가는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제·개정되었거나 앞으로 제·개정을 앞둔 법률이 어떤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이나 결과를 미쳤거나, 혹은 앞으로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음**
- ☑ **영향분석의 대상 분야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제고로 한 국가의 법률이 타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영향분석 시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인 영향 분석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한국 역시 영향분석 시 경제, 사회, 환경영향평가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적인 시각으로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 등 다른 국가 혹은 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음
- ☑ **이에 따라 영향분석을 실시할 때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 등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안보는 한 국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 안보 관련 법률에 대해 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 안보 및 국방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외교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법률이라도 일부 조항이 다른 국가, 국제기구나 단체와의 외교 및 국제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는 최근 국제관계 상황이 급변하는 데 기인함.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진영화,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등이 강해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한반도 정세 불안정으로 인하여 외교 및 국제관계가 중요한 상황임. 따라서 일부 조항 등에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경우 영향분석 시 국제관계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EU, 영국,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은 영향분석 시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 관련 분석을 함께 실시하고 있음

- EU는 영향분석 시 정치·외교안보적 영향분석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유럽집행위원회나 EU이사회는 영향분석 관련 전언, 가이드라인, 기관 간 합의, 톨박스 등을 통해 법률안의 국제관계와 국제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관련 사례로 2014년 「안보평화 규칙안」 영향분석 보고서와 「보조금 규칙안」 영향분석 보고서를 들 수 있음

- 영국은 외교, 안보에 대한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영향분석에 포함시키고 있음

- 관련 사례로 2012년 「정의와 안전 법안」 영향분석 보고서와 2021년 「권리법안」 영향분석 보고서를 들 수 있음

- 에스토니아는 2010년대 들어 규제영향분석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2011년 채택된 「좋은 입법 관습과 법안에 관한 법」 제46조(법의 영향)는 규제영향분석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는 인구, 경제, 환경, 지역 개발, 국가 기관에 대한 영향 외에도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 등 총 7개의 기준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관련 사례로 2021년 에스토니아 해양공간 계획 영향분석 보고서를 들 수 있음

- 스위스는 효과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방법무부와 스위스 평가학회 등을 중심으로 전문화, 효율화, 일원화 제고를 모색하고 있음

- 2004년,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시행한 효과성 평가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 국가의 역할 증대, 국제관계의 역할 강화 등의 새로운 당면과제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점이 있다고 평가함

☑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 실행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인 영향분석은 EU, 에스토니아 등에서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들 간의 관계 개선 및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둘째, 상기한 국가들은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을 법률이나 기관 간 합의 등 법적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으며, 영향분석의 일관성, 효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셋째,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을 모든 법률의 제·개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은 양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질적 평가를 위주로 분석을 실행할 수 있음

☑ **한국은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 등과 관련된 영향분석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음**

- 첫째,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일러, 유럽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영향분석 시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의 진영화, 신냉전 도래 등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자유주의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들과 경제, 외교안보 면에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외교안보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법률안이나 법률의 영향분석 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셋째, 최근 안보 범위가 군사적 충돌 등 전통적 안보에서 경제, 기후, 디지털, 국경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비전통적 안보와 관련된 법률안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논의할 경우 향후 다른 국가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Chapter

---



## 들어가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 들어가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 ☑ 정의

- 입법평가(Legislative Impact Analysis) 혹은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이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제·개정되었거나 앞으로 제·개정을 앞둔 법률이 어떤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이나 결과를 미쳤거나, 혹은 앞으로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음<sup>2)</sup>
  - 실제 입법평가 절차에서는 법률안이나 채택된 법률이 국가, 기업, 단체, 개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일컫음

## ☑ 용어<sup>3)</sup>

- 영향분석의 유형과 종류, 목적 등에 따라 영향분석이라는 용어는 국가별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sup>4)</sup>
  - 영향분석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음
    -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실행하고 있는 유형으로 목적은 법안의 비용편익을 검토하는 데 있음
    -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EU와 회원국 등 유럽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영향분석과 관련된 모든 직간접적 영향을 통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환경영향분석(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법안 혹은 법률이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유사한 용어로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가 있는데, 이는 환경영향분석보다 더 광범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 대상으로 함
    - 빈곤영향분석(Poverty Impact Assessment): 개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원 분배가

2) Inter-Parliamentary Union and partner organizations, *Indicators for democratic parliaments, based on SDG targets 16.6 and 16.7*, 2022.4., p. 341.

3) 각국마다 영향분석을 지칭하는 용어와 의미에 차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입법영향분석 혹은 영향분석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4) OECD, *Guidance on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2010.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측정함

- 무역영향분석(Trade Impact Assessment): 무역 협정과 무역 자유화 등으로 인한 경제,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 경쟁평가(Competition Assessment): 시장 경제에서 주로 경쟁에 관한 법령의 영향을 검토하는데 활용됨
- 대체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입법평가제도, 영미법계에서는 규제영향분석제도, 유럽연합에서는 영향평가제도, 일본에서는 정책평가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용어별로 영향분석 대상과 범위,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음<sup>5)</sup>
- 영향분석제도가 가장 발전된 유럽의 경우 국가별로 영향분석에 관한 용어가 상이함
  - EU와 영국은 영향평가, 스위스는 입법평가(Gesetzesevaluation),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입법영향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 프랑스는 영향분석(Etude d'impact),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일본은 정책평가(政策評價)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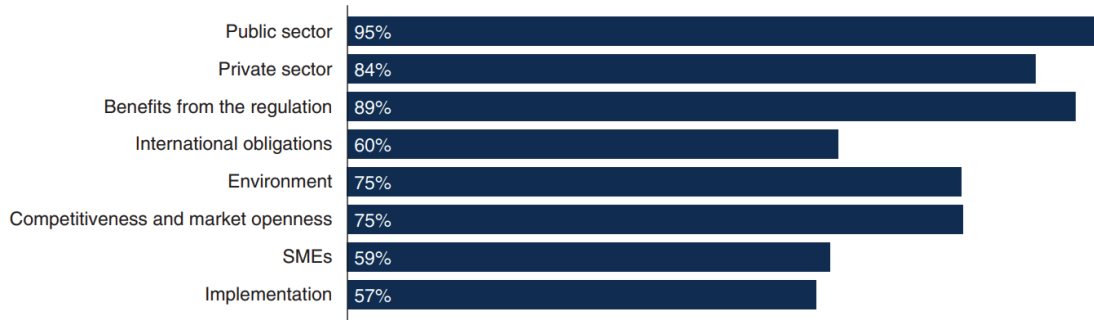
- 영향분석의 범위는 국가별로 다른데<sup>6)</sup> 대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제, 사회, 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약 95%의 국가들이 법안이 공공부문에 대해 야기할 수 있는 행정비용 등에 관한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규제영향분석 외 분야에 대한 영향분석은 국가별로 공공부문/민간부문, 성평등, 국가안보,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어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음<sup>7)</sup>

5)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입법평가연구』, 2009, p. 7.

6) World Bank Group, *Global Indicators of Regulatory Governance: Worldwide Practices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2018.3., pp. 5-6.

7) World Bank Group, pp. 5-6.

[그림] 각 대상분야별 영향분석 실행국 비중



자료: : GIRG database, <http://rulemaking.worldbank.org> World Bank Group, p. 6에서 재인용.

- 위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국가 중 95%가 행정비용 등 공공부문에 대해, 84%는 민간부문에 대해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은 민간부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EU, 아랍 에미레이트, 대만 등 25개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모두 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음<sup>8)</sup>
- 12개 국가가 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고 있으며, 18개 국가는 인구 통계적 영향이나 사회적 포용과 같은 사회적 영향도 평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국가 간 상호의존성 제고로 한 국가의 법률이 타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영향분석 시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인 영향 분석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sup>9)</sup>
  - World Bank에 따르면 약 60%의 국가가 국제 조약 등의 국제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여러 국가 중 에스토니아는 국가 안보 및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 에스토니아의 영향분석 대상 분야로는 △ 국가 안보 및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 △ 사회적, 인구 통계적 영향, △ 경제에 대한 영향, △ 생활 및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 △ 지역 개발에 대한 영향, △ 국가 기관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조직에 대한 영향 등을 들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영미법계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들어 “보다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보다 나은 법률(Better Law)”를 입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향분석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sup>10)</sup>

- 2023년 기준, 한국은 정부 제출 법률안이나 행정입법에 대해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 2005년

8) 단 세계은행은 이 데이터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영향분석 제도를 분석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 바 있음.

9) World Bank Group.

10) 김수용, 2009, p. 8.

성별영향평가제도, 2006년 부패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음

### ☑ 문제의식

- 한국의 경우, 영향분석이 점차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 정치,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관계가 강화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 면으로는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던 세계화 경향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약화되었으나, 2023년 엔데믹이 선언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복구되면서 국가 간 경제, 무역, 정치적 의존도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
    - 일례로 세계 주요국 간의 수출입 의존도도 상승하고 있음. 일례로 2010년대 들어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2022년 미국-중국 무역액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바 있음
  - 안보 면에서도 국가 및 지역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등 권위주의 국가 진영과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민주주의 진영 등을 중심으로 블록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이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 혹은 단체, 개인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겪을 우려가 있음

### ☑ 연구 목적

- 최근 국가 간 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적 상호의존성 증가, 국제법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각 국가의 법적 충돌 가능성 증가 등이 목도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국내법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 혹은 지정학적으로 거리가 있는 국가, 국제법 등과의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
  - 이에 한국 역시 법률에 대한 영향분석 실행 시 다른 국가나 국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갈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EU 등은 영향분석의 기준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을 들고 있음. 국제관계나 국제법적 영향분석은 영향분석의 주요 기준은 아니지만, EU법 중 국제관계나 국제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분석에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한국도 국제적 영향분석 흐름과 타국가 및 국제법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정치·외교안보적 영향분석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영향분석 시 외교안보 및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좋은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 문제제기와 연구방법론

- 외교안보 및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 첫째, 제·개정 법이 한국과 다른 국가 혹은 국제기구와의 외교 관계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 둘째, 한국의 주요 국제관계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 셋째, 국제법 혹은 타국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가?
- 본고는 영향분석의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측면에 관한 필요성을 살펴본 뒤, 해외 국가의 영향분석 제도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Chapter

---



## 영향분석 현황과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

1. 영향분석 현황	14
2.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	16

---

# 영향분석 현황과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

## 1. 영향분석 현황

☑ 한국은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을 채택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세계 각국이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입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제도나 입법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

- 한국은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은 영미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sup>11)</sup>으로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

☑ 2023년 기준, 한국은 환경, 성별, 부패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정부의 법령, 조례, 규칙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 한국은 소규모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의 경우 1980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협의)에 따라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공업항 또는 도로의 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관하여 미리 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함
    - 세부적으로는 1993년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과 행정계획 등에

11) 김수용, 2009, pp. 24-25.

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sup>12)</sup>

● **성별영향평가<sup>13)</sup>**

-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국가정책 내 성차별적 요소와 원인을 파악·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법적으로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뒤, 2005년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음
-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등에 대해 부패유발요인의 여부 등을 분석·검토하고 있음. 또 「부패방지법」에 따라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 운용되는 등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영미 국가에 이어 독일, 스위스 등 대륙법 국가들의 평가제도도 국내에 소개되면서 환경, 사회 등으로 영향분석 대상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 **그 중 환경에 대한 영향분석은 한국 등 110여개 국에서 실행하고 있음<sup>14)</sup>**

- 미국의 환경영향평가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 채택되면서 시작되었음.
  - 「규제분석 수행 관련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Regulatory Analysis)」에 따라 공중보건이나 안전과 관련해 금전 단위로 일차 편익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 특히 공중 보건이나 안전 관련 규칙에 관해서는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금전적 단위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리적 단위로, 물리적 단위도 불가할 경우에는 질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sup>15)</sup>
- 프랑스는 1976년 「자연보호 관련 1976년 7월 10일 no. 76-629법(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에 따라 “자연환경 및 풍경의 보호, 동·식물종 보전, 생태균형 유지 및 자연자원을 모든 파괴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나 건설 공사 이전에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12) 김기태,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2017.10, pp. 67-86.; 한상운, 「환경영향평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연구」, 『입법평가연구』, 2009, pp. 257-285.

13) 권순현, 김영숙, 「성평등 관련법제의 성과와 과제」, 『입법평가연구』, 2012.9., pp. 145-180.

14) 한상운, pp. 257-285.

15) 박수현,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 2009.6., pp. 116-117.



- 일본은 2001년 1월부터 「행정기관 정책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평가 대상 분야로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을 들 수 있음<sup>16)</sup>

## 2.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

### 가. 개괄

☑ 최근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 국가의 국내법 제정이 다른 국가 혹은 국제기구, 국제법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목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향분석 시 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국가 간 외교안보적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 국내법의 국제법과의 충돌 등을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입법 시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갈등 발생 시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경제, 사회, 정치 등 외교안보나 국제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법안의 경우에도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 등 국제관계, 국제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국방이나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안의 경우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나 안보적으로 이해관계가 높은 미국 등과의 외교안보 관계를 고려할 수 있음
  - 군사적, 물리적 충돌과 같은 전통적 안보 이슈 외에 최근에는 첨단기술, 디지털, 사이버 안보, 환경, 에너지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관련 법안에 대한 영향분석을 시행할 경우, 외국이나 국제기구, 단체 등과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 또, 일부 법안은 한국과 지정학적 관계가 적어 보이는 국가 혹은 지역과의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안 검토 시 국제관계 측면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2022년 12월 한국을 비롯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프랑스, 독일, EU,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주요국들이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있음. 한국 법안에 대한 영향분석 시 인태전략과 관련된 국제관계의 흐름이나 한국 정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지 등도 살펴봐야 할 것임
- 더불어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국제 협약, 다른 국가와의 합의 등 한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이상윤,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입법평가적 기능」, 『입법평가연구』, 2009.6., pp. 127-166.

## 나. 안보적 측면

### ☑ 안보는 한 국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 안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안보 및 국방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00년대 들어 국가 간 물리적 갈등 외에도 테러, 내전 등 국가가 아닌 단체와의 갈등 혹은 충돌로 인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야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방법론적으로는 계량화된 수치보다는 법률에 포함된 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영향, 동북아 안보 질서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질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 이는 안보나 국방 관련 영향분석은 국가의 안위, 안보정책 등 비용 대비 효율 등 경제적 이점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내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영향분석과 관련해 「통계법 시행령」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각 부처가 통계청에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하지만 안보, 치안, 행정 절차 등과 관련된 법령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데,<sup>17)</sup> 그 이유는 안보 등과 관련된 법령이 수치로 계량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임

### ☑ 국방 외 분야의 법률의 경우에도 세부적으로는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국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법률의 경우에도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음은 경제, 국제 개발협력,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지만 세부 내용상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사례들임
  - 1987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목적 면에서 보았을 때 「대외무역법」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런데 일부 조항은 안보와 관련이 있음. 예를 들어 「대외무역법」 제3절은 전략물자<sup>18)</sup>의 수출입에 관한 것으로, 동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으로 지정된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음
    - 또 전략물자가 허가 없이 수출될 경우, 동법 제23조(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에

17) 고인석, 「한국 입법평가제도의 정착과 개선방안」, 『입법평가연구』, 2017.10., pp. 147-180.

18)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 등을 의미함. 법제처, 전략물자 수출의 개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7&ccfNo=5&cciNo=2&cnpClsNo=1>(검색일: 2023.5.22.).

- 따라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 등의 이동이 중지될 수 있음
- 따라서 「대외무역법」 등과 같이 일부 조항이 안보나 국제관계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이러한 부분도 외교안보 관련 영향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더 나아가 최근 안보 개념이 전쟁 등 전통적 안보에서 경제, 식량, 환경, 에너지 등 비전통 안보로 확대되고 있음. 최근 일본 등 일부 국가와의 관계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 미중 전략 경쟁의 일환으로 일부 품목에 관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 디지털 등과 관련된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비전통 안보가 위협받을 만한 우려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된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음**

● 원자재 관련 법률의 경제안보에 대한 영향분석

- 2023년 3월 30일 가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사업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sup>19)</sup>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 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미국, EU 등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정성과 그린 산업 보호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 서방의 갈등 상황과 연관성 등도 영향분석에서 함께 고려해야 함
-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과 칩스법(CHIPS Act), 2023년 3월 EU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등에서 보듯 주요국들의 첨단기술에 관한 법제정이 이어지고 있음. 미국의 IRA, 칩스법, EU의 핵심원자재법은 북미와 유럽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안보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의 IRA는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광물과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중국 등 특정 국가의 광물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공급망 등 한국의 경제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sup>20)</sup>
  - EU의 핵심원자재법도 IRA와 유사하게 전략원자재와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자: 기획재정부위원장, 의안번호: 2120969, 제안일자: 2023.3.29).

20) The White House, Inflation Reduction Act Guidebook(검색일: 2023.5.23.), <https://www.whitehouse.gov/cleanenergy/inflation-reduction-act-guidebook/>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지원금, 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sup>21)</sup>

-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된 유사한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미국, 유럽 등 국제 안보의 흐름과 원자재, 부품 등과 관련된 대중 견제 전략의 경향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첨단산업 경쟁력도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할 경우 한국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음은 경제안보에 미칠 수 있는 첨단산업 관련 법률의 사례임

- 2023년 4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재정비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sup>22)</sup>

● 또 다른 경제안보 관련 법안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식량 안보, 환경 안보, 에너지 안보 등과 관련한 일명 ‘공급망 3법’을 들 수 있음.

- 공급망 3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sup>23)</sup> 「국가자원 안보특별법」,<sup>24)</sup>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소부장특별법 개정안)<sup>25)</sup>임

•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 법안은 핵심 자원 확보 현황과 세계 수급 상황, 향후 소비 전망 등에 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sup>26)</sup>

•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일반적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21) European Commission, Critical Raw Materials: ensuring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for EU's green and digital futur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661](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1661)(검색일: 2023.5.23.),

22) 법제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2830&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검색일: 2023.5.23.),

2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안: 류성걸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17816, 제안일자: 2022.10.14.).

24) 「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안: 양금희 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2118958, 제안일자: 2022.12.15.).

2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22092, 제안일자: 2023.5.17.).

26) 이슬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창인데…국회서 표류 중인 '공급망 3법」, 『매일경제』, 2023.5.1.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공급망 센터 설치를 통해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한국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공급망 3법이 다루고 있는 해외 공급망은 미국-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등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세계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과 아울러 국가안보적 측면의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음
- 공급망 3법은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등 국제관계 및 안보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법안 검토 시 안보, 국제관계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 외교 및 국제관계적 측면

☑ 비외교 관련 법률이라도 다른 국가, 국제기구나 단체와의 외교 및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기한 바와 같이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진영화,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등이 강해지고 있음

☑ 한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한반도 정세 불안정으로 인하여 외교 및 국제관계의 중요성이 큰 국가임. 따라서 향후 외교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세부 내용상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이라면 영향분석 시 국제관계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들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국제개발협력법)은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한국의 외교 정책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국제개발협력법의 개정을 논할 경우, 개발협력을 지원하는 협력대상국뿐만 아니라 그 협력대상국 내 개발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정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협력대상국, 즉 어느

국가를 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할 것인가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국제개발협력법 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에 따라 한국은 “종합기본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할 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개발협력대상국 선정은 협력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외에도 개발협력 자금을 지원하는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고려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도 협력대상국 선정 시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상 국가 선정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 동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해 요청했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하지만 협력대상국 선정의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동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음
- 국제개발협력법에서 협력대상국 선정 등에 관한 조항을 제·개정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정치, 안보 등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법률에서도 일부 외교상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제·개정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2010년 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함
  -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 하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음. 그러나 동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지 못함
- 국가 안보나 외교상 기밀, 국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이 관련 정보를 처리, 송·수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나 이득보다 국가적인 손실이나 피해가 더 클 수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다룰 경우 외교, 안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함

**라. 국제법적 측면**

**☑ 경제면에서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면서 한국도 여러 국가들과의 양자적인 협약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 제·개정 시 국제협약이나 국제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한국이 2010년 10월 EU와 체결한 FTA를 언급할 수 있음. 2019년 7월, EU는 한국에 대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정)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의 이행을 촉구함
  - 동 조항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EU가 1998년 제86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이하 ILO 선언)에 따라 자국법과 관행에서 노동 관련 기본 권리를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것임
  - 본 조항에 명시된 노동 관련 기본 권리는 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이하 결사의 자유), ②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이하 강제노동 철폐), ③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이하 아동노동 폐지), ④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이하 차별 철폐)이며, 세부적으로는 총 8개의 핵심협약으로 구성됨
  - 2019년 기준, 한국은 4개의 핵심협약만 비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EU의 개선 요청이 제기되었으며, 2019년 12월 한국과 EU의 입장과 현황을 조사하는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었음
- 2021년 4월, 한국은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된 제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핵심협약을 비준 완료했으나, EU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2021년, 양국 전문가 패널이 EU에서 제기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준수 관련 FTA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한 한국과 EU의 입장에 차이가 있음
  - 패널은 한국이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했으며, “관련 협정을 위반한 바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 이번 결론에는 노동조합법 개선도 함께 권고했음<sup>27)</sup>
  - 반면, 전문가 패널 결론에 대한 EU의 입장은 한국과 차이가 있음. EU는 전문가 패널의 결론이 한국의 협정 미준수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sup>28)</sup>
- 향후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경우, 한-EU FTA 협정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논의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ILO 회원국으로서 ILO 선언과 2021년 노동조합법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 패널의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경우 ILO 및 유럽과의 국제법 측면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함.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법 개정 시, 개정 상황을 EU에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음

## 마. 외교 및 안보 관련 영향분석 사례

### ☑ 한국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 외교, 안보와 관련된 영향분석을 시도한 사례가 있음

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검색일: 2023.5.2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433567>>.

28) European Commission, Panel of experts confirms the Republic of Korea is in breach of labour commitments under our trade agreement, Press Release, 2021.1.25.

☑️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향분석 보고서 작성 지침 및 관련 질문과 관련해 9개의 분석항목이 포함된 점검표를 활용했는데, 여기에 외교, 안보, 안전 영향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음<sup>29)</sup>**

- 분석항목은 △ 법체계적 분석(7개 질문), △ 경제적 영향분석(12개 질문), △ 사회적 영향분석(14개 질문), △ 성별 영향분석(1개 질문), △ 환경·생태적 영향분석(4개 질문), △ 규제영향분석(3개 질문), △ 부패영향분석(2개 질문), △ 외교·안보·안전 영향분석(5개 질문), △ 기타 영향분석(1개 질문)이었음
- 구체적으로 외교·안보와 관련된 질문의 예로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음<sup>30)</sup>
  - 이 법률(조항)이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이 법률(조항)이 남북관계·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이 법률(조항)이 국방,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 본 점검표를 활용해 작성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중 국방 및 안보, 외교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병역법』 중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영향분석,<sup>31)</sup>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3조(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의 영향분석<sup>32)</sup> 등을 들 수 있음

29) 김준, 『사후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 특별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12., p. 44.

30) 원시연, 장경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의 영향분석, 영향분석보고서, 2015.11., p. 8.

31) 김예경, 『병역법』 중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영향분석, NARS 영향분석보고서, 제1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12.

32) 유용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3조(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의 영향분석, NARS 영향분석보고서, 제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12.



## Chapter

## 3



## 해외 사례

1. EU	25
2. 영국	32
3. 에스토니아	34
4. 스위스	35

## 1. EU

## 가. 개괄

☑ EU는 영향분석을 위해 영향분석제도(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있는데, 영향분석 시 정치·외교안보적 영향분석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

- 이는 입법 시 인접국 등 다른 국가와의 잠재적인 외교 및 안보 갈등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타국가 및 국제법 등과의 갈등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또 이는 기존의 경제, 사회,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영향분석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2000년대 들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집행위)나 EU이사회(Council of the EU, 이사회)<sup>33)</sup>는 영향분석 관련 전언, 가이드라인, 기관 간 합의, 톨박스 등을 통해 법률안의 국제관계와 국제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 2002년, 집행위는 『영향분석 관련 집행위 전언(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Impact Assessment)』를 채택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집행위는 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 국제법에서 파생된 국제적 의무(international obligations), 안보,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해야 한다고 설명했음<sup>34)</sup>
  - 영향분석 대상<sup>35)</sup>

33) 집행위는 EU 행정부, EU이사회는 유럽의회와 함께 입법기관 역할을 함.

34)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Impact Assessment*, COM(2002) 276 final, 2022.5.6., p. 6.

35) European Commission, 2022.5.6., pp. 3, 5-7, 15.

- 기본적으로는 지침(Directive), 규칙(Regulation)<sup>36)</sup> 등 규제적 성격이 있는 제안에 대해 시행됨. 그 외에도 일부 예산 지출 프로그램, 국제적 합의에 대한 협력 가이드라인, 백서 등도 영향 평가가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영향분석 시 비상 상황, 국제적 의무사항, 인권, 안보, 치안과 관련된 규제적 제안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일부 유형의 제안은 영향분석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일례로 정책 제안을 아직 구상 중인 정책 성격의 녹서(Green Paper),<sup>37)</sup> 국제적 의무와 집행위 결정에 따라 작성되는 정기적인 집행위 결정이나 보고서, 제안, 행정명령, 기술적인 정보 갱신 등을 들 수 있음
  - 집행위는 집행위 제안(Proposals of the European Commission)에 대한 영향분석의 “범위와 방법론(scope and methodology)”은 제안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음.<sup>38)</sup> 즉 기본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영향분석을 실시하지만, 사안에 따라 국제법 등에 따른 국제적 의무, 안보, 안전 문제 등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영향분석은 △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의 심도 있는 분석 실행, △ 조약이나 국제적 합의와 관련해 특별한 자문이 요청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영향 분석은 직간접적 영향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EU의 국제개발정책 등 EU의 대내외 정책도 포함하고 있음
- 2009년, 집행위는 『영향분석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에서 입법의 외교안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sup>39)</sup>
  - 집행위는 EU는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준수하고 있으며 영향분석 역시 기본권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그 중 시민의 권리와 관련해 시민은 외교적, 영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집행위 제안에 대한 영향분석 시 본 제안이 시민의 외교적, 영사적 보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와 같은 시각에 따라 영향분석에서 주요 사안을 파악할 경우 제안이 평화와 국제안보를 보존하고,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이하 CFSP)에 관한 협력 목표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지 고려해야 함
- 2016년, EU 입법기관들과 행정부 기관들은 『더 좋은 입법에 관한 유럽의회, EU이사회, 집행위의 기관 간 합의(Institutional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mmission on Better Law-Making)』(이하 기관합의)을 채택하고, 이에

36) EU법에는 지침, 규칙, 결정(Decision) 등이 있음. 지침은 EU에서 채택된 뒤 일정 기간 동안 회원국들이 EU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상대적으로 법 개정 및 적용에 자율성을 지니며, 규칙과 결정 등은 EU에서 채택된 후 바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지침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37) 녹서란 EU, 영국 등에서 정책 제안을 논의, 심의하기 위해 제공된 임시 자문용 공문서를 의미함.

38) European Commission, 2022.5.6., p. 3.

39) European Commission, *Part III: Annexes to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2009.1.15., pp. 23.

따라 영향분석을 실행하고 있음<sup>40)</sup>

- 기관합의 전문은 세 기관이 법 제정 시 실행하는 사전영향분석과 현 법률에 대한 사후 평가, 그리고 이에 관한 공공 및 관련자 자문은 더 좋은 입법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함. 세 기관 모두 영향분석이 EU법제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합의함(제12조)

● 2021년 11월, 집행위는 『더 나은 규제. 가이드라인(Better Regulation. Guidelines)』을 통해 영향분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음<sup>41)</sup>

- 영향분석 시행 시, 대상이 되는 집행위의 제안에 일관성, 효과성, 효능성, 적절성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일관성의 경우, 영향분석 대상이 되는 법안과 그간 EU가 실행한 개입(interventions)이나 EU가 체결한 국제적인 합의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즉 새로운 법안은 그간 EU가 실행한 군사작전 등의 개입과 국제 협정 등 국제 합의와 부합해야 함
- 영향분석 시 지정학적 맥락도 투명하게 분석, 제시되어야 함. 같은 맥락에서 대내 정책의 대외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대내 정책이 제3국에 대해 미칠 수 있는 대외적 영향도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채택함

● 2023년 5월 기준, 집행위는 『더 좋은 규제. 툴박스(Better Regulation. Toolbox)』를 운영하고 있음. EU는 영향분석 툴박스는 영향분석의 일반원칙, 실행방법, 분석 대상 등에 관해 총 608쪽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상세한 분석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EU와 27개 회원국 간에 정보 부족, 이해나 해석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sup>42)</sup>

- 영향분석 대상이 되는 집행위 제안, 국제협정 등은 민감성과 중요성에 따라 △ 정치적으로 민감/중요한 사안, △ 비정치적으로 민감/중요한 사안으로 구분됨. 이 중 정치적으로 민감/중요한 사안에는 제정 입법안, 선언, 백서 외에 국제협정 협상안 등이 포함됨. 또 국제협정이 EU법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영향분석을 실행함
- 영향을 측정할 때 △ 선택된 정책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이 무엇인가?, △ 그 중 현격히 중요한 영향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이 되는 형식을 취함. 또 이러한 영향에 대해 가능하다면 양적으로 영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능하다면 질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해야 함
  - EU의 영향분석 기준은 기후변화, 천연자원의 질,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 환경과 관련된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경제, 사회, 환경과 관련해 제3국, 개도국, 국제관계 측면도 평가하도록 함

40) "Institutional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mmission on Better Law-Making", Non-legislative Acts, L123, *Official Journal of the EU*, Vol. 59, 2016.5.12., p. 1.

41)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SWD(2021) 305 final, 2021.11., p. 5,

42)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why and how*, [https://commission.europa.eu/law/law-making-process/planning-and-proposing-law/better-regulation\\_en#objectives-of-the-better-regulation-agenda](https://commission.europa.eu/law/law-making-process/planning-and-proposing-law/better-regulation_en#objectives-of-the-better-regulation-agenda)(검색일: 2023.5.28.);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Toolbox*, 2021.11., pp. 23, 38, 44, 83, 136-8, 219-220, 225, 256, 374, 394, 408-409.

- 더불어 EU는 톨박스를 통해 영향분석 시 WTO 협정, 제3국과의 FTA 협정, 튀르키예와의 관세협정 등 EU가 제3국 혹은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정과 부합성도 체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EU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이 체결한 국제기구 가입 및 관련 협정 준수 의무 등을 포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제안에 대한 영향분석은 △ WTO와 관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과 부합하는지, △ FTA, 국제협정 등 EU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나 합의 등과도 부합하는지, △ 그 외 EU와 제3국이나 단체, 집행위나 회원국의 주도로 체결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 합의 등과도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경우에 따라 집행위 제안이 국제적 합의 외에도 EU가 주도하는 대내외 개입(interventions) 활동과도 부합하는 지 확인해야 함. 제안과 EU의 상이한 개입 활동들, EU와 국제 정책,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정책 요소 간의 일관성 유지는 향후 법률과 정책 등이 서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임. 그 예로 EU의 노동 시장 개입과 ILO 협정 간의 일관성 확인 등을 들 수 있음

**☑ EU의 영향분석을 담당하는 기관 중 하나인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는 영향보고서의 최종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음**

- 체크리스트 중 외교안보, 국제법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 규정 초안이 국제 기준에서 불필요하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 국제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파트너 국가 인권에 대한 영향(외부적 차원의 제안에 관하여) 등을 들 수 있음

**나. 사례**

**☑ EU는 2003년부터 영향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를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sup>43)</sup>**

- 2023년에는 농업, 경제재정, 일자리 및 사회복지, 에너지와 교통, 기업과 산업, 환경, 대외관계, 수산업, 보건과 소비자, 사회정보, 내부시장, 내무사법 등 총 12개 분야의 제안에 대해 영향분석이 실시되었음
- 2016년에는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경쟁,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에너지, 환경, 유로스타트(Eurostat), 재정안정, 내부시장, 보건, 이민내무, 사법과 소비자, 해양 및 수산업, 이동과 교통, 연구와 학문, 해외정책, 대외정책실행국(Service for Foreign policy instruments, 이하 FPI),<sup>44)</sup>

43)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검색일: 2023.5.28.), [https://ec.europa.eu/smart-regulation/impact/ia\\_carried\\_out/cia\\_2003\\_en.htm](https://ec.europa.eu/smart-regulation/impact/ia_carried_out/cia_2003_en.htm)

44) FPI는 EU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 등의 실행을 지원하는 기구임. European Commission, *Service for Foreign Policy Instruments*(검색일: 2023.5.28.), <https://fpi.ec.europa.eu/index>

세금과 관세, 무역 등 19개 분야로 확대되었음

☑ 사례1: 「안보과 평화 기여 기제 구축을 위한 2014년 3월 11일 No. 230/2014 규칙안(Proposal for a Regulation from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No 230/2014 of 11 March 2014 establishing an instrument contributing to stability and peace)」(이하 안보평화 규칙안)에 관한 영향분석

● 2016년 5월 7일, 집행위는 안보평화 규칙안에 관한 영향분석을 공개함<sup>45)</sup>

- 본 영향분석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음

영향분석 보고서	
안보 및 개발 지원을 위한 역량 구축(CBSD)을 위한 규칙안	
1. 서론	
1.1. 정책 맥락	
1.2. 현재 EU 대외 행위 수단의 차이: 부족한 연관관계	
1.3. 문제점 정의: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1.4. 시험 프로젝트: 한계점 설명	
1.5. 공동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이하 CSDP): 한계점 설명	
1.6. EU 주요 법률 상 맥락	
1.7. EU의 대응 필요성 및 정당화(보조성)	
1.8. 기본 시나리오	
2. 목표: 어떤 것을 달성해야 하는가?	
2.1. 일반적 목표	
2.2. 구체적 목표	
2.3. 위험 및 완화 조치	
2.4. EU 정책과의 일관성	
3.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옵션	
3.1. 정책 옵션 확인	
3.2. EU 일반 예산 외 옵션	
3.3. EU 일반 예산 내 옵션	

45) European Commission, JOINT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Capacity Building in support of Security and Develop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Regulation from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No 230/2014 of 11 March 2014 establishing an instrument contributing to stability and peace, SWD(2016) 222 final, 2015.5.7., p. 2.

### 3.4. 정책 옵션 설명

- 옵션 1 - 아프리카평화기금의 조정
- 옵션 2 - EU 일반 예산 외, 유럽 개발 기금 (EDF)와 유사한 새로운 특화 수단
- 옵션 3 - 아테나 기제 개정
- 옵션 4 -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기구의 조정
- 옵션 5 - 기존 EU 수단을 활용한 '설비'
- 옵션 6 - 제209조와 제212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특화 수단
- 옵션 7 - CFSP 하에서 28조 TEU에 기반한 새로운 수단

### 4. 정책 옵션 비교 및 영향 평가

- 4.1. 옵션 비교
- 4.2. 선호 옵션
- 5. 모니터링 및 평가

- 본 규칙안은 EU 협력국들의 안보와 개발 지원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특히 협력국에 대한 개발 지원을 위하여 분쟁, 불안,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안보와 안정성을 안착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협력국의 안보 강화와 EU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sup>46)</sup>
  - 안보와 개발 간에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으며, EU의 협력개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협력국의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를 위해 협력국의 개발, 안보, 정치 주체 간에 일관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무장테러 그룹 등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음
  - 또 안보 불안정성 회복, 난민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EU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국에 대한 안보 교육과 군비 확충, 의료시설,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시설 및 식수 및 생활용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구체적으로는 정책 구상, 재정 지원 등이 병합된 CBSD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EU의 개발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U는 협력국에 대한 안보 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CBSD는 CSDP 등의 협력국에 대한 기존의 재정 지원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EU는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이하 EDF) 산하에 구축된 아프리카평화기금(African Peace Facility, 이하 APF)를 통해 아프리카 주도의 군사 평화와 안보 작전을 재정 지원하고,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고자 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APF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EDF의 APF에 대한 재정 할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APF 예산 활용, EU외 예산으로 기구 신설, 아테나 기제 정비, 안정평화기구 재정비 등, 본 규칙안을 논의하면서 거론되었던 여러 선택사항을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의 기준으로 분석, 비교해 가장 적절한 선택사항을 제안함.

46) European Commission, SWD(2016) 222 final, 2015.5.7., pp. 2, 10-12.

☑ 사례2: 내부시장 교란성 해외 보조금 관련 규칙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이하 보조금 규칙안)에 관한 영향분석

- 2021년 5월 5일, 집행위는 보조금 규칙안에 대한 영향분석을 공개했음<sup>47)</sup>
- 본 영향분석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음

영향분석 보고서	
내부시장 교란성 해외 보조금 관련 규칙안	
1. 서론: 정치적 및 법적 맥락	
2. 문제 정의	
2.1 범위	
2.2 문제 1: 매입에 따른 왜곡	
2.3 문제 2: 공공조달에 따른 왜곡	
2.4 문제 3: 기타 시장 왜곡	
2.5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2.6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3. 왜 유럽 연합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3.1 법적 근거	
3.2 부가 가치	
4. 목표: 어떤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가?	
4.1 일반적 목표	
4.2 구체적 목표	
5. 가능한 정책 옵션은 무엇인가?	
5.1 기준은 무엇인가?	
5.2 초기에 고려되었으나 폐기되었던 옵션은 무엇인가?	
5.3 추가 평가가 필요한 옵션은 무엇인가?	
6. 정책 옵션의 영향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6.1 문제 1 - 매입에 따른 왜곡	
6.2 문제 2 - 공공조달에 따른 왜곡	
6.3 문제 3 - 기타 시장 왜곡	
7. 옵션들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7.1 문제 1 - 매입에 따른 왜곡	
7.2 문제 2 - 공공조달에 따른 왜곡	
7.3 문제 3 - 기타 시장 왜곡	
8. 선호하는 옵션	
9. 실제 영향은 어떻게 모니터링 및 평가될 것인가?	

4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SWD(2021) 99 final, 2021.5.5., p. 2.



- 본 규칙안은 EU 내부시장에 대한 교란 등 외국 보조금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참고로 외국 보조금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지원금이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증가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본 규칙안은 무역 및 경제에 관한 것이지만, 외국 보조금의 성격 상 EU 회원국과 역외 국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음. EU는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sup>48)</sup>
  - EU 비회원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합병을 금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규칙안을 보호주의의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일부 외국 국가의 경우 본 규칙안이 자국 기업에 자국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해 보복 조치를 취할 우려도 있음. 특히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국의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외국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EU 기업에 대해 직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WTO 규칙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EU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이 EU에서의 외국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기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 본 규칙안은 기존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 내부 시장 전반에 걸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게 객관적이고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또 본 규칙안은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WTO 등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국제 규칙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더불어 본 규칙안은 다른 국가나 지역이 EU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예를 들어 제3국에 대해 WTO의 정부 조달 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국제 조달 기구(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등의 국제 협정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 영국

### 가. 개괄

영국은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 시 법안의 내용에 따라 외교, 안보에 대한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영향분석에 포함시키고 있음

- 2020년 영국 의회가 공개한 규제영향분석 템플릿(Template)에 따르면 영향분석은 △ 비용편익, △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영향,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 △ 관련 단체나 조직의 유무 등을

<sup>48)</sup> European Commission, SWD(2016) 222 final, 2015.5.7., pp. 57, 63.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sup>49)</sup>

- 다른 국가와의 외교나 국제관계, 국가 안보 등은 주요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후술할 「정의와 안전 법안」 사례에서 보듯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나. 사례

### ☑ 영국의 영향분석 중 외교안보, 국제관계 등을 포함한 사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음

#### ● 사례 1: 「정의와 안전 법안(Justice and Security Bill)」(2012)

- 「정의와 안전 법안」은 공공 안전과 국가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음. 당시 동법의 영향분석 시 외교안보와 관련된 영향분석을 포함시킨 바 있음<sup>50)</sup>
- 영국은 노리치 파마칼 명령(Norwich Pharmacal order)이라는 제소 전 증거개시 제도를 운용하는데, 이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신원 파악이나 증거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음
- 「정의와 안전 법안」은 보안 서비스, 비밀 정보 기관, 정보 통신 본부 등 국가의 정보와 안보 문제와 관련된 부문에 대해서는 노리치 파마칼 명령을 제한하고자 함. 때에 따라 국가 안보나 국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 외교, 정보 관계에 관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특히 국가 안보나 다른 국가와의 국제관계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자료의 경우, 정부가 장관으로 하여금 비정부기관의 자료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 「정의와 안전 법안」에 대한 영향분석에 따르면 본법은 기존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분석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의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및 국제관계,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에 대해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음

#### ● 사례 2: 「권리법안(Draft Bill of Rights)」(2021)<sup>51)</sup>

- 영국 정부는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대체할 「권리법안」을 제정하고자 했음.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2022년 6월 19일 영향분석을 제출했음
- 본 영향분석은 「권리법안」이 사회,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함

49) UK Govern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guidance for government departments*(검색일: 2023.5.21.),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mpact-assessments-guidance-for-government-departments>

50) UK Parliament, *Justice and Security Bill - Overarching IA*(검색일: 2023.5.21.), <https://www.parliament.uk/globalassets/documents/impact-assessments/IA12-034.pdf>

51) UK Parliament, *Draft Bill of Rights*(검색일: 2023.5.2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84545/bill-of-rights-impact-assessment.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84545/bill-of-rights-impact-assessment.pdf)

- 발언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할 경우, 국가 안보 보호, 시민의 안전 보호, 개인에 대한 피해 방지 조치 강구 등을 통해 발언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함. 또 발언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있어 국가 안보에 따른 결정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언의 자유 보호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일례로 해외 군사작전과 인권 강화 조치 간에 갈등이 야기될 경우, 군 장병과 국방부는 무장갈등법과 국제인도주의법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함

### 3. 에스토니아

#### 가. 개괄

☑ **에스토니아는 2010년대 들어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sup>52)</sup>**

- 2007년, EU의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지원을 받아 “더 좋은 규제 프로그램(Better Regulation Programme)”을 실행하기 시작함. 2011년, 에스토니아 의회는 특별워킹그룹이 제안한 규제영향분석 정의를 승인함
- 2011년, 「바람직한 입법 관습과 법안에 관한 법(Rules for Good Legislative Practice and Legislative Drafting)」이 발효되었음.<sup>53)</sup> 동법은 법률의 의도, 개념, 구조 외에도 규제영향분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동법 제46조(법의 영향)에 따라 법을 실행할 경우 다음 분야들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분석해야 함
    - ① 인구적 영향을 포함한 사회적 영향
    - ②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
    - ③ 경제에 대한 영향
    - ④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
    - ⑤ 지역 개발에 대한 영향
    - ⑥ 주 당국 조직과 지역 당국 기관에 대한 영향
    - ⑦ 기타 직간접적 영향
  - 에스토니아는 동법을 통해 규제영향분석 시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도록

52) Helena Braun, *First years of systematic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Estonia - Lessons learnt*, Ministry of Justice, PPT Presentation, 2014.9.18.

53) Riigi Teataja, *Rules for Good Legislative Practice and Legislative Drafting*(검색일: 2023.5.30.), <https://www.riigiteataja.ee/en/eli/508012015003/consolide>

강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동법 제46조에 적시된 7개 분야 중 영향을 받은 것은 어느 것인가?, △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타깃 집단은 무엇인가?, △ 타깃 집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는가?, △ 타깃 집단 중 현격한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 영향으로 인한 변화와 분석 대상이 되는 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음

- 2012년 12월, 정부가 규제영향분석 방법(Methodology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을 채택함. 규제영향분석 방법은 영향분석을 시행할 경우 실제적인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음<sup>54)</sup>
- 참고로 에스토니아는 사전 규제영향분석과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모두 실시하고 있음

## 나. 사례

☑ 2021년에 공개된 『에스토니아 해양공간 계획. 영향분석 보고서(Estonian Maritime Spatial Plan. Impact Assessment Report)』는 해양자원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바다 및 해안가의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함. 본 보고서는 해양자원과 경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바다의 특성 상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도 강조되고 있음<sup>55)</sup>

- 구체적으로는 바다와 같은 자연에는 가시적인 국경선이 없기 때문에 에스토니아를 포함한 발트해 주변의 EU 회원국들이 국제법,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EU 비회원국들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해양 관련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음

## 4. 스위스

☑ 스위스는 영향분석으로 효과성 평가(Evaluation de l'efficacité)를 실시하고 있음. 참고로 스위스는 효과성 평가 조항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한 첫 국가로 영향분석에 대한 법적근거를 체계화하고 있음

- 「스위스 연방헌법(Constitution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이하 연방헌법) 제170조는 “연방의회(Assemblée fédérale)는 연방(Confédération)이 결정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방의회법(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은 영향분석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54) Helena Braun, *First years of systematic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Estonia - Lessons learnt*, Ministry of Justice, PPT Presentation, 2014.9.18., 5.

55) Rahandusministeerium, *Estonian Maritime Spatial Plan. Impact Assessment Report*, 2021, p. 7.

- 효과성 평가의 대상에는 법률 외에도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전략 등이 포함됨
- 「연방의회법」 제27조(효과성 평가): 연방의회는 ① 연방정부에 대하여 효과성 평가를 실행하도록 촉구하거나, ② 연방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효과성 평가를 실행하거나, ③ 직접 효과성 평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sup>56)</sup>
- 「연방의회법」 제44조제1항제f호에 따라 연방의회 위원회는 효과성 평가의 결과를 고려해야 함
- 연방정부는 「연방의회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연방정부는 효과성 평가의 기준으로 △ 법적 근거, 기본권에 대한 영향, 상위 법 및 유럽법과의 충돌 가능성, △ 국제법 적용 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해석 여지, △ 지자체, 도시, 산간 지방에 미치는 영향, △ 법적 효력의 기간, △ 위임 권한, △ 사전영향분석, △ 재정 및 비용적 영향, △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 △ 규제 법안으로 인한 개인에 대한 영향, △ 정보 및 통신 비용에 대한 영향, △ 남녀 평등에 대한 영향, △ 해외 거주 스위스인에 대한 영향을 포괄하고 있음

☑ **효과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방법무부와 스위스 평가학회(Société suisse d'évaluation, 이하 SEVAL) 등은 전문화, 효율화, 일원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음**

- 2005년, 연방법무부는 『연방 효과성 평가 안내서(Guide de l'évaluation de l'efficacité à la Confédération)』를,<sup>57)</sup> 2020년에는 『스위스 평가학회의 평가 기준(Standards d'évaluation de la Société suisse d'évaluation)』 등이 효과성 평가 실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음<sup>58)</sup>
  - 본 보고서들은 효용성, 실행 가능성, 윤리강령, 정확성 등의 효과성 평가 기준을 소개하고 있으나, 경제, 무역, 외교, 국제관계, 국제법 등 세부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2004년, 연방정부는 최근 30여 년간 효과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행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음. 그러나 국가의 역할 증대, 국제관계의 역할 강화 등의 새로운 당면과제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함<sup>59)</sup>
  -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유연성과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 지적함. 특히 법률에 관해 효과성 평가를 실행할 경우 예산상의 한계와 빈번한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해 효과성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56) Confédération fédérale,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검색일: 2023.5.5.), <<https://www.fedlex.admin.ch/eli/cc/2003/510/fr>>.

57) Thomas Widmer, *Guide de l'évaluation de l'efficacité à la Confédération, Instrument d'assurance qualité fondé sur les standards d'évaluation de la Société suisse d'évaluation(Standards SEVAL)*, Berne: 2005.

58) Société suisse d'évaluation, *Standards d'évaluation de la Société suisse d'évaluation*, 2020.6.5.

59) Office fédéral de la justice, *Efficacité des mesures prises par la Confédération Propositions de mise en œuvre de l'art. 170 de la Constitution fédérale dans le contexte des activités du Conseil fédéral et de l'administration fédérale. Rapport du Groupe de contact interdépartemental "Evaluations de l'efficacité" à la Conférence des secrétaires généraux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Berne: 2004.7.14., p. 14.

- 연방정부는 효과성 평가를 일부 연방법에 명시함으로써, 효과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sup>60)</sup> 그 중 국제법과 관련된 부분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간 FTA」 제2.8조에 따라 한국과 EFTA 회원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무역장벽과 관련해 WTO 협정,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전자기술위원회(Commission électrotechnique internationale) 등 국제법을 준수해야 함

60) Office fédéral de la justice OFJ, Aperçu des clauses d'évaluation en droit fédéral(검색일: 2023.5.7.), <https://www.bj.admin.ch/bj/fr/home/staat/evaluation/materialien/uebersicht.html>

## Chapter

## 4



## 나가며

1. 시사점	39
2. 개선방안	40

## 1. 시사점

☑ 일부 유럽 국가들은 영향분석을 실시할 때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한 영향 외에도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외교안보, 국제법, 국제관계면에서의 영향분석도 실시하고 있음

- 기술 발달로 인해 원거리에 있는 국가라도 다른 국가의 법률 제·개정에 대해 손쉽게 알 수 있으며, 타국의 법률 제·개정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
- 한 국가의 법률 제·개정이 다른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 외교안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 우려가 있는 국가는 이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자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최근 한국은 미국, EU 등 여러 국가들과 경제, 안보 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2023년 1월 기준,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10개국, EU 27개국, 미국, 등과 21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EU 및 베트남 등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주요 국가들과 경제, 안보 면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들과의 관계 유지 및 강화도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법률 제·개정 시 경제적,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2022년 미국이 IRA를 발효했을 때, 한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이 이로 인해 자국의 경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음. 한국 등은 미국에 대해 자국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특히 한국은 북핵, 북한과의 관계 등 한반도 긴장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인 만큼,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EU, 스위스, 영국,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들의 영향분석 기준과 현황, 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첫째, 이러한 국가들에서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인 영향분석은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들 간의 관계 개선 및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스위스, 영국, 에스토니아 등은 EU 회원국이거나 EU와 경제, 정치, 법률 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들로 여러 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복잡한 관계에 있음. 특히 EU 회원국들은 EU가 지침을 채택할 경우 국내법을 정해진 시한 내에 EU 지침에 부합하도록 제·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EU와 높은 법적 상호연관성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영향분석 시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도 분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을 법률이나 기관 간 합의 등 법적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으며, 영향분석의 일관성, 효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한국 역시 성별, 환경, 부패영향평가 등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영향분석 기준이 과도하게 많으며, 법률적으로 산재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유럽의 예와 같이 영향분석을 단일 법률화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 등을 통합하여 실행하는 안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음
- 셋째, 특기할 만한 점은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을 모든 법률의 제·개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EU, 스위스, 영국, 에스토니아의 경우에서 본 것과 같이 법률 중 이러한 측면에서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단 양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질적 평가의 가치도 높이 평가하고 있음. 이는 경제적 영향분석 외에도 질적 평가로만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 분야도 법률 제·개정 시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음

## 2. 개선방안

**☑ 한국의 경우 환경, 성별,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교안보, 국제관계, 국제법 등과 관련된 영향분석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이와 관련해 EU, 영국, 국가들의 이러한 영향분석 기준과 현황, 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음**

- 첫째,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일러, 유럽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법 제·개정 시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 기후 등 외교안보나 국제관계와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이는 법률이더라도 세부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이 2023년 3월과 4월에 채택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두 법률을 이하 K-칩스법이라 통칭)은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 설비투자 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미국과 EU도 2022년부터 핵심원자재 및 부품 등과 관련해 IRA, 칩스법, 핵심원자재법 등을 채택해왔음

- 동 법률들은 일견 첨단기술 및 경제산업 관련 법률로 보일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대중 견제 전략을 내포하고 있음. 미국은 중국 등 우려국가(country of concern)의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할 경우 세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 역시 현지에서 채굴 및 생산, 조립된 제품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견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K-칩스법과 유사한 법률안을 논의할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주요국들 핵심 원자재와 부품에 관해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경향과 함께 대중 견제 전략도 내포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대내외에 설명할 경우 대상에 따라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의 진영화, 신냉전 도래 등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자유주의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들과 경제, 외교안보 면에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외교안보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 특히 한반도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도 필요한 상황임

- 최근 한국과 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2023년 5월, 중국은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릴 경우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 '4불가'방침을 전달함

- 최근 국제관계가 급변하고 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무역, 외교적 관계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향후 법률의 제·개정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셋째, 최근 안보 범위가 군사적 충돌 등 전통적 안보에서 경제, 기후, 디지털, 국경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비전통적 안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을 논의할 경우 향후 다른 국가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고인석, 「한국 입법평가제도의 정착과 개선방안」, 입법평가연구, 2017.10., pp. 147-180.
- 권순현, 김영숙, 「성평등 관련법제의 성과와 과제」, 『입법평가연구』, 2012.9., pp. 145-180.
- 김기태,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2017.10.
-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입법평가연구』, 2009, pp. 7-32.
- 김예경, 「『병역법』 중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영향분석」, NARS 영향분석보고서, 제18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12.
- 김준, 『사후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 특별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1.12.
- 박수현,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 2009.6., pp. 85-126.
- 이상윤,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입법평가적 기능」, 『입법평가연구』, 2009.6., pp. 127-166.
- 원시연, 장경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의 영향분석, 영향분석보고서, 2015.11.
- 유웅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3조(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의 영향분석」, NARS 영향분석보고서, 제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12.
- 이슬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창인데…국회서 표류 중인 ‘공급망 3법」, 『매일경제』, 2023.5.1.
- 한상운, 「환경영향평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연구」, 『입법평가연구』, 2009년.6.
- “Institutional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mmission on Better Law-Making”, Non-legislative Acts, L123, Official Journal of the EU, Vol. 59, 2016.5.12.
- Braun, Helena, *First years of systematic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Estonia – Lessons learnt*, Ministry of Justice, PPT Presentation, 2014.9.18.
-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SWD(2021) 305 final, 2021.
- \_\_\_\_\_, Better Regulation. Toolbox, 2021.11.
- \_\_\_\_\_,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 SWD(2021) 99 final, 2021.5.5.
- \_\_\_\_\_,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Impact Assessment, COM(2002) 276 final, 2002.5.6.
- \_\_\_\_\_, JOINT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Capacity Building in support of Security and Develop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Regulation from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 (EU) No 230/2014 of 11 March 2014 establishing an instrument contributing to stability and peace, SWD(2016) 222 final, 2015.5.7.
- \_\_\_\_\_, Panel of experts confirms the Republic of Korea is in breach of labour commitments under our trade agreement, Press Release, 2021.1.25.
- \_\_\_\_\_, Part III: Annexes to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2009.1.15.
- Forbici, Goran and Lovitt, Jef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Consultations: Comparative Models, Lessons Learned & Recommendations for Belaru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Consultations: Comparative Models, Lessons Learned & Recommendations for Belarus – Study, Council of Europe, 2018.7.
- Inter-Parliamentary Union and partner organizations, *Indicators for democratic parliaments, based on SDG targets 16.6 and 16.7*, 2022.4
- OECD, *Guidance on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2010.
- Office fédéral de la justice, *Efficacité des mesures prises par la Confédération Propositions de mise en œuvre de l'art. 170 de la Constitution fédérale dans le contexte des activités du Conseil fédéral et de l'administration fédérale. Rapport du Groupe de contact interdépartemental "Evaluations de l'efficacité" à la Conférence des secrétaires généraux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Berne: 2004.7.14.
- Rahandusministeerium, *Estonian Maritime Spatial Plan. Impact Assessment Report*, 2021.
- Société suisse d'évaluation, *Standards d'évaluation de la Société suisse d'évaluation*, 2020.6.5.
- Widmer, Thomas, *Guide de l'évaluation de l'efficacité à la Confédération, Instrument d'assurance qualité fondé sur les standards d'évaluation de la Société suisse d'évaluation(Standards SEVAL)*, Berne: 2005.
- World Bank Group, *Global Indicators of Regulatory Governance: Worldwide Practices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2018.3.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②

## 입법평가의 고도화:

외교안보 및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의 필요성 검토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 F. 044. 868. 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입법평가의 고도화:

외교안보 및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의 필요성 검토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F. 044. 868. 9913

